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71
----------	-------

발의연월일 : 2026. 3. 20.

발 의 자 : 서왕진·강경숙·신장식
김준형·차규근·백선희
황운하·김정호·박지혜
박은정·이해민·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이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지분 투자, 채권 매입, 펀드 가입 등으로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 또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수익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물, 해양, 풍력, 태양광, 경관 등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법적·사실적 사용료·임대료·마을기금 등으로 지급하는 개발이익의 환원금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
-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를 “협동조합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목적에 한하여 주민 참여 조건, 개발 이익공유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이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지분 투자, 채권 매입, 펀드 가입 등으로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 또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수익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물, 해양, 풍력, 태양광, 경관 등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법적·사실적 사용료·임대료·마을기금 등으로 지급하는 개발이익의 환원금을 말한다.</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p> <p>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되어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③ (생략)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생략)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

1. ~ 9. (현행과 같음)

10.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방안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

-----.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협동조합에-----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

으로 출자하는 방식

3. (생략)

②·③ (생략)

<신설>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목적에 한하여 주민 참여 조건,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